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1. 12. 15.(목)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의결 가 ~ 의결 라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30차 전원회의(2009.7.9), 제2010-1차 전원회의(2010.1.14), 제2011-17차 전원회의(2011.3.21), 제2011-67차 전원회의(2011.11.30)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 보고 가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1(서면보고)제1항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안건에 해당됨

2) 의결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에스티엔 등 2개사
- (2011-72(서)-413)

- o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에스티엔 등 2개사의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주)에스티엔 등록 내용 >

신청법인	채널명	방송분야	방송유형	대표자	최다액출자자 (지분율)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주)에스티엔	에스티엔 스포츠 (STN SPORTS)	스포츠	TV	이강영	이강영 외2 (100%)	5.0억원 (6.3억원)

< (주)오리온 시네마네트워크 변경등록 내용 >

신청법인	채널명	방송유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주)오리온 시네마네트워크	스토리온 (StoryOn)	TV	방송분야	버라이어티쇼·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TV전자상거래 포함)	버라이어티쇼·드라마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TV전자상거래 포함)

나. 방송법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놀티비 등 6개사 및 박병운 등 2명 - (2011-72(서)-414~421)

- o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3항 및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주)놀티비 등 6개사 및 박병운 등 2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 내용 >

법인명(성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놀티비	대표자 등 변경신고 지연	250만원
(주)중국연합티브이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250만원
(주)화진방송	주된 사무소 변경신고 지연	250만원
(주)투원미디어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250만원
한방건강티브이(주)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250만원
(주)한국청소년방송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250만원
박병운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지연 (주)일자리방송)	250만원
윤양노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지연 (주)한국청소년방송)	250만원

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 (2011-72(서)-422)

-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주)KT, SKT(주)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인가 내용 >

구분	협정명
1	KT(시내전화)와 KCT(인터넷전화)간 개인번호서비스(050) 상호접속협정
2	KT(시내전화)와 KCT(인터넷전화)간 전국대표번호서비스(1877) 상호접속협정
3	KT(시내전화)와 삼성SDS(인터넷전화)간 상호접속협정
4	SKT(이동전화)와 삼성SDS(인터넷전화)간 상호접속협정
5	SKT(이동전화)와 삼성SDS(국제전화)간 상호접속협정
6	SKT(이동전화)와 KCT(인터넷전화)간 개인번호서비스(050) 상호접속협정
7	SKT(이동전화)와 온세텔레콤(국제전화)간 과금대행업무 수수료 변경 상호접속협정

① KT와 KCT의 개인번호(050) 및 전국대표전화(1877) 상호접속협정

- (접속망 구성) 기존 협정('07.6월)에 의해 연결된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개인번호 및 전국대표전화 서비스 제공 (인가신청 1, 2번)
- (접속통화료) KT의 시내전화 발신시 접속이용사업자인 KCT가 KT에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며,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통보한 요율 (시내전화 18.5694원/분)을 적용
- (부대서비스 비용) 시내전화 발신시 KCT가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을 KT가 대신 징수하고, KCT는 KT에게 회수대행수수료(과금액의 10%)를 지급기로 당사자간 합의

② KT 및 SKT와 삼성SDS의 인터넷전화 상호접속협정

- (접속망 구성) 접속이용사업자(발신사업자)의 교환기로부터 접속제공사업자(착신사업자)의 교환기까지의 접속회선 구성 (인가신청 3, 4번)
- (접속통화료) 접속이용사업자(발신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착신사업자)에게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며,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통보한 요율 적용

※ 접속통화요율 : KT 시내전화 착신(18.5694원/분), 이동전화 착신(30.5015원/분), 인터넷전화 착신(10.4813원/분)

③ SKT와 삼성SDS의 국제전화 상호접속협정

- (접속망 구성) 접속이용사업자(삼성SDS)의 국제전화 교환기로부터 접속제공

사업자(SKT)의 이동전화 교환기(회선분전반)까지의 접속회선 구성 (인가신청 5번)

- (접속료 산정) 접속이용사업자인 삼성SDS가 접속제공사업자인 SKT에게 접속 통화료를 지급하며,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통보한 요율(이동전화 30.5015원/분)을 적용

④ SKT와 KCT의 개인번호(050) 상호접속협정

- (접속망 구성) 기존 협정('07.5월)에 의해 연결된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개인 번호 서비스 제공 (인가신청 6번)
- (접속료 산정) 이동전화를 이용한 개인번호 서비스는 접속이용사업자(발신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착신사업자)에게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며,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통보한 요율 적용

※ 접속통화요율 : SKT 이동전화 착신(30.5015원/분), KCT 인터넷전화 착신(10.4813원/분)

⑤ SKT와 온세텔레콤의 국제전화 서비스에 대한 과금대행업무 수수료 변경 상호 접속협정

- (과금대행 수수료 변경) 국제전화 과금대행 수수료를 기존 2.5%('05.6월) 에서 3.2%로 변경하고 협정 체결 (인가신청 7번)
- SKT는 온세텔레콤의 국제전화 서비스에 대한 과금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온세 텔레콤은 SKT에게 국제전화 과금대행 수수료를 지급

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72(서)-423)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10년도 경쟁상황 평가결과, 전년도와 같이 시내전화는 (주)KT가, 이동전화는 SK텔레콤(주)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1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함

<고시 개정 내용>

< 현행 >

서비스명	전년도 매출액 기준	사업자명
시내전화	17,200억원이상	(주)케이티
이동전화	94,900억원이상	SK텔레콤(주)

< 변경 >

서비스명	전년도 매출액 기준	사업자명
시내전화	15,100억원이상	(주)케이티
이동전화	96,400억원이상	SK텔레콤(주)

○ 향후 일정

- 개정안 발령(관보게재) : '11. 12월말

③ 보고사항

가.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 '11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시상 목적

-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건전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

② 시상 분야

시상분야	시상 부문	시상 취지	
프로그램 분야	大賞	○ 2011년도에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우수상	창의발전	○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공헌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사회·문화	○ 사회 통합, 국민 사기진작 및 문화 발전 등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지역발전	○ 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문화, 지역경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뉴미디어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등의 프로그램 중에서 매체의 특성을 잘 살려 제작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시청자제작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시청자 주권 향상에 공헌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라디오	○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공익적 소재를 통해 방송문화 발전에 공헌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특별상 분야	공로상	○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선정·시상	
	바른 방송언어상	○ 바른 우리말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방송기술상	○ 방송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③ 시상부문 및 부문별 시상금

시상 분야	시상 부문	시상규모	시상금	훈격	
프로그램 분야	大賞	1점	2천만원	대통령	
	우수상	창의 발전	2점	각 5백만원	방통위원장
		사회·문화	2점	각 5백만원	
		지역발전	2점	각 5백만원	
		뉴미디어	2점	각 5백만원	
		시청자제작	2점	각 5백만원	
		라디오	2점	각 5백만원	
소 계	13점	8천만원			
특별상 분야	공로상	1점	1천만원	방통위원장	
	바른 방송언어상	1점	5백만원		
	방송기술상	1점	5백만원		
	소 계	3점	2천만원		
시상금 합계			1억원		

④ 심사방안

- 외부전문가로 예심·본심 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를 거쳐 대상·우수상·특별상 수상대상을 결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구 분	예심 심사위원회	본심 심사위원회
구 성	위원장 포함 9인 이내 (외부 전문가)	위원장 포함 9인 이내 (외부 전문가)
심사 일정	2012. 2. 1 ~ 2.25 기간 중 4 ~ 5회	2012. 2. 27 ~ 3. 9 기간 중 2 ~ 3회 (필요에 따라 합숙 실시)
구성·운영세부 계획	추후 별도 수립	추후 별도 수립

※ 예심, 본심 간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예심위원 중 2~3인을 본심위원으로 위촉

⑤ 추진일정

순번	추진 업무	일 정
1	o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보고	'11. 12. 15(목)
2	o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실시공고 및 통보	'11. 12. 19(월)
3	o 응모 작품 접수	'12. 1. 4(수) ~ 1. 13(금)
4	o 예심, 본심 심사위원회 구성	~ '12. 1. 27(금)
5	o 예심·본심 실시	'12. 2. 1(수) ~ 3. 9(금)
6	o 수상작 선정 보고	'12. 3. 14(수)
7	o 시상식 개최	'12. 3. 19(월)

※ 상기 일정은 출품작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12. 3.26~3.27)에 따라 행사일정 조정